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법무 02124- 907	(전화: 713 - 6156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	지	장
수신처 보존기간	영 구		1052
시행일자	1990. 7. 23 .	<i>김영구</i>	결재 1990. 7. 21
보존 기간 과	부시장	서 조 기 관	부용기서 통 계
	기획관리 실장		김영 1990. 7. 23
	법무담당관		승계안
기안책임자	법제제장 <i>김영구</i>	훈령제 907 호	발신 1990. 7. 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
경유 수신 참조	가 안 참 조	발신 명 의	
제 목	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제정부담에관한규정		발령
(제 1 안)			
수 신 : 내부결재			
제 목 : 같은건			
1.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제정부담에관한규정			
서울특별시 입체사무처리규칙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			
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.			
첨 부 : 발령안 1부.			
(제 2 안)			
수 신 : 공보관			

제 목 : 시보 게재

1. 별첨 서울특별시 약자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을

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. 끝.

(제 3 안)

수 신 : 예산담당관

제 목 : 훈령 발령

1. 예산02110-139 (90 . 7 . 18) 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 약자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을

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. 끝.

3569

서울특별시 약자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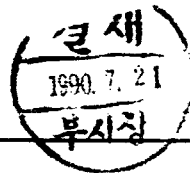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0년 7월 21일

서울특별시장

고

인



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

제 1 조 (목 적)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,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재정부담 기준에 관하여 법령,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재정부담의 종류와 기준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업무분야별 경비의 기준(이하 "재정부담기준"이라 한다)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②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 부담을 허가나 또는 추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재정부담에 따른 재원의 종류) ① 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소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시비 및 구비로 구분 부담함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비

가.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

나. 기 금

다.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및 재정보조금

라. 기 타

2. 자 치 구 비

가.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

나. 기 금

다. 기 탁

부 칙

이 규정은 별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세정부담 기준(제3조 관린)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내무국	1. 인건비	○시산하 공무원의 급여 및 관련경비	○자치구산하 공무원의 급여 및 관련 경비
	2. 영선사업	○시영선사업	
	가.구청사건립	○구영선사업 일부 -신규건립 :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50% -증·개축 : 소요액의 50%	○구영선사업 -신규건립 :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50% -증·개축 : 소요액의 50% -청사유지관리 경비
	나.구민회관	-부지매입, 신축비 50% -증·개축 50%	-부지매입, 신축비의50% -증·개축 50% -유지관리 경비
	다. 구의회 의사당	-신 축 · 건축비 50% -증·개축 50% -임 차 50%	-신 축 · 부지확보 100% · 건축비 50% -증·개축 50% -임 차 50%
	라.동청사건립 및 증·개축	-신설에 따른 신규 동청사 건립비 50%	-신설에 따른 신규동청사 건립비 50% -확장, 이전에 따른 신축 및 증·개축비 전액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	
내무국	3.통반장 운영, 지원 격려	-	통반장 수당지급 및 격려 경비 전액	
	4.공직선거	○시의원 선거 경비	○구의원 선거경비	
	5.호적 및 주민 등록 관리	○호적 및 주민등록 총관 관리	○호적 및 주민등록 발급 관리	
	6.새마을소득사업		○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	
	7.새마을 시설물 운영	○새마을시설물 운영관리 지도	○새마을시설물 운영관리	
	8.각종 사회 단체 지원	○시단위 조직에 대해 사업 단위로 예산지침 범위내 지원	○구단위조직에 대해 사업 단위로 예산지침 범위내 지원	
	재무국	9.지방세와 지방세의 수입의 부과징수	○시세와 시세의 수입의 부과징수	○구세와 구세의 수입의 부과징수 ○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○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책정 및 시가조사
		10.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의 감사와 재산의관리	○시예산 편성,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	○구예산 편성,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11.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		○시행정장비 관리 및 행정관리 개선 ○행정전산화 업무총괄 조정 및 시행	○구행정장비 관리 및 행정관리 개선 ○행정전산화 추진	
12.공유재산 관리		○시유재산관리	○국유, 구유재산관리	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시민생활국	13.쓰레기청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광역단위 일반폐기물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 -쓰레기매립장 및 시설 -쓰레기처리장의 확보 및 운영 (중계처리장-해안매립장) -분뇨처리장 -쓰레기중계처리장 -기타 일반폐기물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단위 일반폐기물의 처리 -쓰레기 수거 및 처리 -쓰레기 수거 인력 장비유지관리 (청소원, 차량, 기타장비) ○일반폐기물 중간,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 -쓰레기적환장 -쓰레기 중간집하장 -기타 중간, 간이처리시설 ○소규모 공동이용 위생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-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 -이동식 화장실 -기타 공중용 위생시설
보건사회국	14.주민복지일반에 관한사업	○시민복지증진 및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	○구민복지 증진 및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보건 사회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전체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인계, 조정, 지도 및 조연에 관한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단위 지역주민 이용 복지시설의 설치, 운영, 지원 ○구민복지 상담 ○기타 환경위생 증진등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일반 시책사업 추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5.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 수립 -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-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-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사회복지시설 관련업무에 대한 시사무의 위임 사항 처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6.생활보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생활보호 일정액 지원 - 자활보호(긴급구호) : 시비 100% - 거택보호 : 국비 50%, 시비 25% - 시설보호 : 국비 50%, 시비 50% - 의료보호 : 국비 50%, 시비 50% - 직업훈련 : 국비 100% - 취로사업실시(총소요의 5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생활보호의 실시 - 자활보호(긴급구호) : - - 거택보호 : 구비 25% - 시설보호 : - - 의료보호 : 시위임 집행 업무 - 직업훈련 위임사항 - 생업자금 지원 - 취로사업 실시(총소요의 50%)

시 장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보건 사회국		- 교육보호(학자금보조) · 거택보호자녀 : 국비50%, 시비25% · 시설보호자녀 : 국비50%, 시비50% · 자활보호자 자녀 : 국비50%, 시비50% · 의료부조자 자녀 : 국비50%, 시비50%	- 교육보호(학자금지원) · 거택보호자녀 : 구비 25%
	17.의료보호	○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	○의료보호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집행 - 의료보호대상자 지정 및 관리 - 보호비용의 징수 및 지급 (지방비부담액 전액) - 기타 의료보호실시 업무
	18.장애자 복지	○심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○심신장애자의 검진, 재활 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○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·지원	○심신장애자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중시위임 사무
19.전염병예방 및 기타질병 의 예방	○전염병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대주민 홍보	○전염병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 계도	

1999. 7. 16
시장

소관	사부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보건 사회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○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○ 전염병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그 기관 소요경비 보조 ○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○ 약물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 ○ 결핵진료소 및 요양소의 설치 운영 ○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○ 전염병예방 대응시설 지정운영 ○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득의 실시 ○ 기생충 예방 ○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
	20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	○ 자치구 보건소(지소)업무의 지도 감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소(지소)의 설치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물건립(국비50%, 자치구비50%) - 보건소(지소)장비의 설치 및 보강(국비50%, 자치구비 50%) - 보건소(지소)의 유지운영
가정 복지국	21. 노인, 아동,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 및 복지증진		

1999. 7. 10
시장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가정 복지국	가.노인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노인복지사업계획의 수립·조정 ○경로사업의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경노우대 사업시행 -재가노인 봉사활동 -노인상담소 운영 및 노인능력개발, 직종보급 ○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,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단위 노인복지사업 계획 수립 ○경로사업의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노인건강 진단 -노인봉사대 운영·지원 -경로당, 노인정, 노인교실 기타 구단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, 지원 -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, 오락사업 등 -경로주간 설정, 운영 ○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한 시 위임 사무집행
	나.아동복지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아동상담소 설치, 운영 ○아동복지위원회 운영 ○시단위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운용에 따른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아동회관 -아동전용 체육, 연주, 영화, 과학전람시설 등 ○아동보호, 복지시설의 설치, 운영 ○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아동위원회 설치 운영 ○구단위 아동전용시설 설치운용에 따른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아동회관 -아동전용 체육, 연주, 영화, 과학전람시설 등 ○아동보호, 복지시설 관련 시 위임사무

1990. 7. 15.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용특별시비	자치구비
가정 복지국	다.청소년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시단위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- 청소년 회관 - 청소년 종합복지관 - 근로청소년 임대APT - 청소년 광장 - 열람석 200석 초과 청소년 독서실 설치 - 기타 시단위 청소년 이용, 수용 복지시설 ○불우청소년 보호지원 -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- 불우청소년 수용·이용 시설의 설치, 운영,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단위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- 공부방(열람석 50석 이하) 설치, 운영 - 독서실 설치 운영 (열람석 200석이하) - 기타 구단위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, 운영 ○불우청소년 보호지원 - 소년소녀 가장세대 파악, 관리 - 불우청소년 수용·이용 시설에 대한 위임 사무처리
	라.모자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모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, 지원 - 모자보호시설 - 모자자립시설 - 미혼모시설 - 일시보호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모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위임 사무집행

1990
시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가정복지국	<p>마.부녀아동복지</p> <p>22.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</p>	<p>--부녀복지관 및 상담소</p> <p>○요보호 모자세대에 대한 보호, 지원</p> <p>-생계비 지원</p> <p>-아동교육비 지원</p> <p>-아동양육비 지원</p> <p>-직업훈련 및 기타</p> <p>○시단위 부녀아동복지 시설의 설치, 운영 지원</p> <p>-부녀복지관</p> <p>-부녀상담실</p> <p>-기타 광역 부녀, 아동 복지시설</p> <p>○윤락여성선도 및 직업 보도</p> <p>○윤락여성 지도소 및 직업 보도시설의 설치</p> <p>○공설묘지,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 납골당의 설치 운영</p>	<p>○요보호 모자세대의 파악관리</p> <p>○구단위 부녀 아동복지 시설 설치, 운영지원</p> <p>-부녀교실 운영 및 여성교육</p> <p>-탁아원</p> <p>-유아원</p> <p>-기타 구단위 부녀, 아동복지시설</p> <p>○윤락여성 실태조사, 관리</p> <p>○윤락여성 지도 및 직업 보도관련 시위임 사무 처리</p> <p>○무연분묘의 정리</p> <p>○무연유골 처리</p>

1990. 7
시정

소관	사무분야	경 찰 부 담 구 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산업 경제국	23. 소비자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비자 계몽교육 ○ 소비자 보호전담 기구 설치운영 및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의 육성 ○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 · 검사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○ 종합구판장 설치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가지도 단속 ○ 소비자 고발센터 등 소 비자 보호전담기구의 운영관리 ○ 구판장 운영관리
	24. 중소기업의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○ 중소기업 이전 실시 계획의 작성 ○ 중소기업 육성보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해지역 중소기업 제품 의 구매 촉진
	25. 지방공기업 의 설치 및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사의 설립·운영 ○ 지방공단의 설립·운영 ○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	
26. 농림, 축, 수 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산물 수산기반 조성 사업 지원 ○ 농산물 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조정 ○ 농산물 집하장 설치운영 ○ 가축시장 개설운영 ○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○ 농업생산물 및 시설자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시행 ○ 농산물 병충해 방제지도 	

1990. 7. 16
시장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산업 경제국	27.축산개발 및 진 흥 28.가축전염병 예 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 제해대책 ○보호종축의 지정 ○가축개량, 증식보호 ○축산단체지도 육성 ○보건환경연구원 및 시험소 운영 ○도축장 운영 및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, 투약
주택국	29.도시재개발 30.주거환경 개 선 31.도시환경 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도시재개발 및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 ○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○광고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시위임사무 집행 ○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을 위한 시위임 집행사무 ○광고물 관리 -설치허가 및 신고 -불법광고물 단속정비
도로국	32.도로의 설치, 유지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노폭20m 이상 도로의 개설확장 ○노폭 20m 이상 차도의 유지보수 관리 ○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 -노폭 20m 이상 도로의 지하보차도 육교 -노폭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 설치 개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노폭 20m 미만 도로의 개설확장 ○노폭 20m 미만 차도의 유지보수 관리 ○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 -노폭 20m 미만 도로의 지하보차도 육교 -노폭 20m 미만 도로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개량

1991. 7. 16
리 장

소관	시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도로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기타 도로시설물 설치 관리 -한강 상 교량 -B=20m 이상 일반교량 -차도육교 및 고가차도 -입체교차시설 ○노폭 20m 이상 도로변의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○노폭 20m 이상 도로의 제설작업 ○노폭 20m 이상 도로의 굴착복구 및 굴착복구 기금운영 ○노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미불 보상 ○유료도로의 신설, 개축, 수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기타 도로시설물 설치 관리 -B=20m 미만 도로의 일반교량 -일반터널의 유지관리 ○노폭 20m 미만 도로변의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○노폭 20m 미만 도로의 제설작업 ○도로의 굴착승인 및 20m 미만 도로의 복구와 굴착복구 기금 운영 ○노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한 미불보상 ○전체 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
하수국	33.치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직할하천, 지방하천, 준용하천의 복개정비 유지 관리 ○직할·지방·준용하천 부속물의 관리 ○직할·준용·지방하천 편입토지의 미불보상 ○우수배제펌프장 건설 보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거의 복개 정비 유지 관리 ○구거의 부속물 관리 ○구거편입토지의 미불보상 ○우수배제펌프장 유지관리

1990. 7. 16
지장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하수국	34.하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전농, 장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○대단위, 광역 공공하수도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하수처리장, 차집하수관 저설치, 유지관리 -간선하수도(D=900㎜ 이상) 설치, 개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수문의 설치 및 유지관리 ○지역공공하수도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지선하수도(D=900㎜ 미만)설치, 개량 ○간선 및 지선 하수도의 유지관리
	35.재해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청장이 행할 응급조치의 대행 ○재해시설의 설치 ○재해구호 ○해빙기 안전대책 수립 ○재해구호기금 특별회계 설치·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수방단의 조직·운영 ○방재훈련의 실시 ○재해응급대책의 수립시행 ○재해시설의 설치 ○재해구호기금특별회계 설치·운영
환경 녹지	36.임야, 녹지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천연림 보육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천연기념물 ○야생동물 보호계획 수립 지도 ○사방사업 및 절개지 미화단장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단위면적 3,000㎡초과 사업비 전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지정보호수·보존관리 ○야생동물 보호추진 ○사방사업 및 절개지 미화단장 사업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단위면적 3,000㎡이하 사업비 전액

1990. 11. 10.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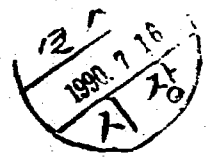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환경 녹지	37.공원녹지	○가로수 녹지대 관리 -세종로, 시청앞, 서울역, 남대문, 대학로의 녹지대	○가로수, 녹지대 관리 -일반가로수 녹지대 관리
		○꽃묘생산 및 보급 ○공원의 설치(조성) -도시자연공원, 묘지공원, 유원지의 조성 -면적 30,000㎡초과의 근린공원 조성	○꽃묘식재·관리 ○공원의 설치(조성) -면적 30,000㎡이하의 근린공원조성 -어린이 공원의 조성
	38.환경분야	○산림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운영	○공원의 유지관리 -도시자연공원, 근린공원, 어린이공원, 묘지공원, 유원지의 유지관리
		○오염(대기오염, 소음, 진동, 자동차, 공해)의 방지대책	○공해에 관한 지도 및 단속
문화 관광국	39.천연기념물 보호 40.유형문화재 41.무형문화재 보호	○천연기념물의 보호 유지관리 ○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○무형문화재 보호·관리	○향토사적 보수 및 유지관리 -

1990. 7. 1. 장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교통국	42.지방문화 예술활성화	○시단위 지방문화사업	○구단위 지방문화사업
	43.주차장	○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 의 수립 및 시행 ○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○시단위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	○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 의 수립 및 시행 ○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○구단위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
	44.교통안전 시설	○교통신호기, 안전표지판, 차선 및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·관리	○도로안내 표지판의 설치, 유지, 관리
	45.불법주차 단속	○불법주차 단속계획 수립 및 실시	
민방위	46.민방위 시설	○민방위교육 기본시설 설 치 및 유지관리비 100% ○기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설치 및 운영비 50%	○기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설치 및 운영비 50%

시장

서울特別市와自治區間의財政負擔에關한規程(案)



서울特別市

서울特別市와 自治區間의 財政負擔에 關한 規程(案)

1. 制定理由

- 現行 市와 自治區間 事務配分이 包括的이고 不分明하거나, 우발적이고 特殊한 事業의 境遇 事務分擔이 明確하지 않아 이에 따른 財政負擔 基準 制度的으로 未樹立
- 現行 條例上의 權限 委任이나 事務의 一般的인 內部委任의 境遇에도 그에 따른 財政負擔에 關한 事項은 從來의 慣行에 따르고 있음
- 이상과 같은 境遇에 대한 米비점을 補完, 合理的이고 具體的이며 體系的인 財政負擔에 關한 一般原則을 設定

2. 主要骨子

- 市와 自治區間의 事務配分에 따른 財政負擔 基準 設定
 - 現行 地方自治法 및 同法 施行令上 包括的이고 不分明한 事務配分內 譯을 細分化, 具體化하여 再分類, 이에 따른 財政負擔 基準 設定
 - 地方自治法上 未規定된 事務中 市와 區間의 財政負擔에 관하여 다른 의 소지가 있는 事務에 대한 財政負擔 基準 設定
- 國庫補助事業에 대한 市와 自治區間의 財政負擔 基準 設定
 - 現行 國庫補助事業의 地方費 負擔에 대한 市와 自治區間의 財源負擔에 관한 內務部令은 內務部 傘下團體를 基準한 것으로 우리市 適用에 一部 부적절하거나 包括的이고 漏落된 事項이 있어 이에 대한 細部基準 再設定

3. 制定根據

- 地方自治法 第9條, 第10條, 第16條 및 同法 施行令 第8條
- 地方財政法 第19條 및 同法 施行令 第26條



서울特別市와 自治區間의 財政負擔에 關한 規程(案)

第1條(目的) 이 規程은 地方自治法 第9條, 第10條, 同法 施行令 第8條의 規程 및 서울特別市 行政權限 委任條例에 의한 所管 事務遂行에 따른 서울特別市와 自治區가 各各 負擔하여야 할 經費의 種目과 內容, 基準을 (設定 함으로서 合理的인 財政運用을 통한 効率的인 市政目標의 達成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(適用範圍) 이 規程의 財政負擔 事項에 關하여 法令, 條例 및 規則에 따로 定한 事項은 除外하고는 이 規程을 適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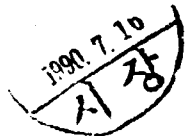
第3條(財政負擔의 種目과 基準) ①서울特別市(이하 "市"라 한다)와 自治區가 各各 負擔하여야 할 經費의 種目과 內容 및 基準(이하 "財政負擔基準"이라 한다)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②市長은 第①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市와 自治區의 財政형편상 또는 施策推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財政負擔基準에 定한 事項과 는 달리 別途의 追加 負擔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.

第4條(財政負擔에 따른 財源의 種類) ①~~서울特別市(이하 "市長"이라 한다)~~과 自治區廳長(이하 "~~區廳長~~"이라 한다)이 所管事業 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市費 및 區費로 負擔함에 있어서는 各各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른 財源을 使用할 수 있다.

1. 市 費

- 가. 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財源
- 나. 基 金
- 다. 自治區에 對한 特別交付金 및 財政補助金
- 라. 其 他



2. 區費

가. 區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財源

나. 基 金

다. 其 他

附 則

이 規程은 발령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